

발행인: 권 성 | 편집인: 김용주 | 발행일: 11월 25일 |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TEL : 397-3114, 3000 | FAX : 397-3069 | www.pac.or.kr

‘루저’ 발언 파문 … 위원회 조정신청 쇄도

KBS 2TV 토크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매주 월요일 밤 11:05)의 속칭 ‘루저 발언’과 관련한 위원회 조정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 '미수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작진의 사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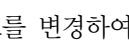
지난 9일 방송분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방송사가 여과 없이 방송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는 것.

11일 한 남성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16일 하루에만 53건이 접수되는 등, 24일 현재까지 모두 246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었다.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최저 2,500원부터 최고 38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들을 서울의 7개 중재부에 배당하여 처리중이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제1중재부는 20일 ‘키 작은 사람이 싫다’는 발언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내 각 언론은 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으며, ‘미수다’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작진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소식지 제호 변경, 배포부수 확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발간하는 소식지 제호가 변경되고, 배포부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대외 홍보매체로 변신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17일 사무처 직원들의 공모결과 등을 참조하여 새로운 소식지 제호를 「언론  사람」으로 확정했다.

2000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소식지는 지난 2006년 1월호부터 「PAC News」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되었으나, 언론중재위원회 영문 약칭을 뜻하는 「PAC」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쉽게 인식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1월호(제113호)부터 새로운 제호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그간 내부 구성원간의 소식 공유 등을 목적으로 발간되던 소식지의 성격에 위원회 대외홍보 부분을 강

화하고, 제호 변경과 함께 발행 부수를 대폭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내년 1월호부터 소식지의 편집 및 수록 내용을 혁신하여 1만부를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1월호 3,000부를 시작으로 점차 발행부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언론  사람

11월호 주요 내용

- 02 인터뷰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 06 지면중계 경남토론회
- 07 서면인터뷰 고승덕 의원의 중재위 이용후기
- 07 만화 언중유감

“사법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두 바퀴”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제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지법 부장판사
-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현)
- 제주중재부 중재부장
(1994. 3. ~ 1997. 2.)



■ 포털의 조정·중재대상 포함은 다행스러운 일



“제가 재임할 당시는 직권조정결정권의 도입을 위해 정기간 행물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렸던 심포지엄에서 제가 「언론중재제도의 개선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은 제주중재부 중재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며, 포털에 대한 조정 중재신청까지 가능하게 된 최근의 위원회 기능 확대에 대해 격세지감을 표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양상은 나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털이 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대상으

로 포함되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의 언론관에 대한 질문에는 사법과 언론 모두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사법과 언론은 민주주의를 움직이고 뒷받침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진실의 발견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판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죠. 특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언론은 사법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사법 또한 재판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지나친 취재경쟁이나 일방적 매도, 선정주의 등에 대해서는 사법이 금도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사명을 게을리 해선 안 되죠. 다만 이러한 상호 비판과 견제는 기본적으로 그 본질과 사명, 구조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 시민들이 법관을 믿을 수 있어야

김 법원장은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의정부지법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법조인이 된 계기가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저는 고교시절 이과반이었습니다. 의대나 공대를 지망하다 입시 직전에 법대로 전환했죠. 그 당시엔 법조인에 대한 별다른 뚜렷한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사법연수원 입소를 기다리며 대학 도서관에서 독일어 원서로 된 법 철학서(G. Radbruch, Rechtsphilosophie)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국가와 사회, 법’이라는 테마에 흥미를 느끼고 대학원

에 입학해 법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 법조인의 책무나 사명을 인식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 더 전문성을 지닌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법관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시민들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열려 있는 법관이 될 때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야스퍼스(K. Jaspers)의 말을 인용해 당부했다. “법관의 독립은 침묵하고 숨는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으로 자유롭게 판결

하고 숨기지 않으며, 이유의 제시 및 재판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법의식을 성숙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 비밀스런 익명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범위 내에서 시민들 가운데 시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법관을 믿을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의 공기는 더 맑아질 것입니다.” 

인터뷰 : 여운규 차장 사진 : 박경미(이상 홍보팀)

이런얘기 저런얘기

절개가 곧았던 기생시인 매창

조선시대의 수많은 여류 시인 중 몇 명만 꼽으라면 대체로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황진이(黃眞伊, ?~?), 이매창(李梅窓, 1573~1610)을 듭니다.

아전인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매창은 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웠고, 그 후 시문과 거문고를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부안의 기생이었지만 시재(詩才)가 뛰어나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집적대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시를 지어서 점잖게 다가오는 손님이나 술에 취해 덤비는 손님을 시를 지어 물리쳤다고 합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옷이 찢어졌을 때 “취객만나삼(醉客挽羅衫:취한 손님이 비단적삼 잡아 당겨)/나삼수수열(羅衫隨手裂:그 손길 따라 비단적삼 찢어졌네.)/불석일나삼(不惜一羅衫:비단적삼 한 벌이야 아까울 것 없으나)/단공은정절(但恐恩情絕:은정이 끊어질까 두려워 할 뿐.)”이라는 시를 지어 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창의 명성을 들은 조일철(趙一徹)은 부안 사포로 부임하자마자 매창에게 수청을 명했습니다. 매창이 이를 거절하자 사포는 옷 의(衣), 날 비(飛), 고사리 미(薇) 세 자를 운으로 내고 개구리를 주제로 시를 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창은 주저하지 않고 “춘우지당탄무의(春雨池塘歎無衣:봄비 내리는 연못가에서 옷도 입지 못해 서러운데)/초중봉사한불비(草中逢蛇恨不飛:풀밭에서 뱀 만나니 날지 못함 한하노라)/봉구생애인약득(封口生涯人若得:만약 입 닫고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이제불식수양미(夷齊不食首陽薇:백이와 숙제도 수양산의 고사리조차 먹지 않았으리)”라는 시를 지어냅니다. 옷도 없고 날지도 못하는 개구리의 신세를 자신의 처지에 비하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넘실거리는 뱀을 사포에 비유한 것입니다.

매창은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 1545~1636)을 사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희경은 비록 천민이었지만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상례(喪禮)에도 일가견이 있어 영의정에 오른 박순을 비롯하여 많은 양반 사대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유희경이 한양으로 돌아감에 따라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매창은 그를 기다리며 수절합니다. 매창의 유희경에 대한 애절한 정은 다음의 시조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화우(梨花雨) 흘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추풍(秋風)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상선약수(上善若水)



박성식 위원(서울제7중재부, 변호사)

9월 1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직자 아닌 공직자가 되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나 역시 과연 중재위원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지식이 뭐가 있나 의구심을 갖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어쨌든 중재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시작하였으니 그 동안 짧은 활동기간에서 느낀 약간의 소회랄까 다짐을 몇 자 적어본다.

신청인들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재위원들은 전문지식과 높은 덕망을 갖춘 사람들로 자신의 억울한 경우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긴장된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오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봉사정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중재위원님들이 대화를 잘 풀어 나가는 것을 보면 웬지 모두 전문적인 지식과 수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그러하다.

약 두 달 동안 중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도 덕망도 봉사정신도 어느 것 하나 온전히 갖추지 못한 나로서는 신청인들의 억울함이나 고충, 피신청인의 보도경위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재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새삼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조정 내지 중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하여 은연중에 신청인들의 애끓는 심정이나 피신청인의 변소를 소홀하게 듣거나 무시한 것은 아닌지 심리가 끝나고 나오면서 항상 생각해 본다.

평소에 겸손하던 사람도 한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감투를 쓰게 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은연중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고 한다. 과시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현상이다. 하찮은 의복 같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하물며 남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지위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내가 혹시 이러한 태도를 은연중에 비추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윗사람이나 지도자가 다른 사람위에 군림하게 되면 사물의

정확한 면모를 볼 수 없다. 또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인보다 높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견지해야 하고, 지위가 높으면 높아지는 만큼 자유도 제한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나 생각보다 당사자의 말을 더 들어 주어나 나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아량과, 혹시나 어느 당사자 일방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생각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신중함은 있었는지? 당사자 쌍방의 문제해결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중재에 임하였는지? 늘 걱정되고 염두에 두는 의문이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성 중에서 겸손이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라면 오만은 그 반대의 버려야 할 악덕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에 방에 들어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있고 난 후 고개를 숙이는 겸손을 배웠다고 한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인데 물은 공평함을 나타낸다.

첫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이고 이는 곧 공평을 의미한다.

둘째, 물은 완전을 나타낸다. 물은 아래로 흐를 때 아주 작은 구멍이든 그것을 완전히 채우면서 흐른다. 그러므로 물이 수평을 이룰 때 그것은 완전한 수평이다.

셋째, 물은 상황에 따라 한없이 변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물을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로 변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변하다. 그러나 물은 본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넷째, 물은 겸손하다 물은 가장 중요한 근원이지만,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낮은 데 있는 모든 곳을 적서준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어진 중재위원의 활동을 물(水)처럼 해 나가려고 다짐해 본다. 

* 노자(老子)가 저술한 「老子」 제 8장 역성(易性)편에 나오는 말

배려는 질서의 기본



정 희성(기획팀장)

지난 10월 1일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21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좌측보행을 90여년 만에 우측보행으로 변경했다. 당연히 일상사에서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고되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곤 한다. 관련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속도는 1.7배 증가할 수 있고, 보행자끼리의 충돌횟수는 24%정도까지 감소한다는 재미있는 분석이다. 우리는 누구나 길거리에서 마주 오는 사람과의 사소한 충돌을 경험했다. 일단은 상대가 있으면 서로가 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러나 어디 우리의 거리가 그런가? 내가 간다. 내 앞길 비켜라 식이다. 서로 자기 길만을 고집하다 사소한 어깨 부딪힘에서 시작해서 시뻘거리로 변지고 마침내는 주먹다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요즘 우리 길거리를 보면,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은 얼마 없다. 특히 젊은 층은 대부분 핸드폰 통화중이면서 걸어 다닌다. 뭘 그리 화급하고 중요한 얘깃거리가 많은지 저렇게 걸어 다니면서까지 통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고개를 떨구고 뭘가에 골몰하면서 움직인다. 앞을 보지 않거나 다른데 집중하면서 길을 걷다보면 마주 오는 상대방과 부딪히기 십상이다. 여기에는 배려의 마음이 부족한데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 타인은 안중에도, 마음에도 없다. 오직 나뿐이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

현대사회의 조직들, 특히 기업들은 ‘글로벌’과 ‘속도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변화’와 ‘혁신’ ‘개혁’ 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반면 그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기업에서 막된 말로 살아남기 위해 개인 능력의 극대화와 독립심을 기르는 데만 치중하게 됐다. 그런 경쟁이 구성원들을 무한한 경쟁과 나만의 잘남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곳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을 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적어도 방관해도 괜찮은 모습일까?

이상적인 집단의 모습은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직과 집단의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면서도 그 구성원 간에는 적어도 타인을 위한 배려가 그 뿌리에 있어야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조직의 모습일 게다. 그렇다고 조직 내에서의 선의의 경쟁,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경쟁을 없애자는 말은 아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또한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조직이나 집단은 그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납득할 만한, 흔히 말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맞는 역할이 있듯 조직 내에서도 상급자로서의, 후배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주어져야 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주어진 역할에 대한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잘났는데,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런 조직 풍토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쪼아간다. 우선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지라도 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그 치유가 쉽지 않다. 그런 갈등은 결국은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개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로 갈등의 연속선에서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꿀 수 있으며, 구성원 간에 신뢰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을 감동시키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에 열정적으로 몰입토록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창출하게 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볼 때다. 



“포털뉴스 언론점유율 급증, 상응하는 책임 요구돼”

— 언론중재위원회 2009년 경남지방토론회 —



위원회는 지난 6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인석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경남중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지역의 언론계, 법조계·사회단체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발표에 나선 김창룡 교수(인제대 언론정치학부)는 지난 8월 7일부로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어 포털도 조정중재 대상이 되었음을 소개하고, 포털에 실린 기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67.3%가 포털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의 87.1%가 포털을 이용하고 있어 포털의 언론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밝히며 포털이 기존 언론 매체에 비해 더 많은 영향력과 권한을 발휘하게 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이라는 영역에 한정돼 규제의 대상에 올라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들의 소극적 자세, 포털의 법적 책임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대법원 판례의 영향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미 포털이 기존 매체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막강한 파워매체로 자리잡았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기존의 미디어들을 따라잡았거나 능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책임을 묻는 수단과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저장, 매개행위 등 부작위의 경우에도 포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개인 블로그에 퍼올려진 기사에 대한 책임은?

토론에 참여한 지역 언론인들은 포털의 책임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문제가 된 보도가 있어 자사 홈페이지의 원문 기사를 삭제했는데 포털에는 남아 있는 경우에도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하재석 마이뉴스 코리아 발행인은 “포털에 올라간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 작성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이 기사가 포털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퍼 올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기사 제공언론사로서 피해구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는지, 포털에 기사삭제 등을 요청하였는지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정도를 논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포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

김 교수는 최근 2개월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포털 관련 조정 중재 사건을 쟁점별로 분석한 결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있어서 포털은 뉴스 제작사에 내려지는 결과를 기다려 단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손해배



고승덕 의원의 중재위 이용후기

고승덕 의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심리결과 두 건 모두 조정이 성립되어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 법조인 출신으로 널리 알려진 고 의원에게 위원회 조정절차를 이용한 소감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경위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9월 말 모 시사 주간지에 제가 미국내 부동산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또 다른 주간신문이 제가 과다수입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행히 언론조정 절차를 거치며 언론사가 제 주장을 잘 납득해 주어서 정정보도가 게재되었습니다.

소송 대신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로서 법원에 익숙한 저에게도 언론상대 소송은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법원에 나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의원도 기자도 바쁜 직업입니다. 저는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로일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바로 잡아, 소송에 매달리는 데 시간 쓰지 말고, 그 대신 좋은 기사 찾아 뛰는 것이 독자들에게 대한 좋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정 절차가 처리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든 최근에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재위를 통해 문제가 신속히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중재위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건 모두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는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중재위원들께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 주셨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수용해 주어 잘 마무리가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도 중재위 조정에 승복해 줘, 언론사로서는 쉽지 않은 '정정보도'를 해줬습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저에 대해 오해하시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중재위원회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원문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게재되어 대중 정치인인 의원으로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청인이 “중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게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포털 등에 게재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또 직권조정결정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중재위 같은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곳에서 직권조정결정이 나온다면, 다른 언론사가 추가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할 때 신청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론중재법 제14조와 제16조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문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고, 이를 정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반론보도 청구는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사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주식회사의 통조림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그 결과 나올 수 있는 정정보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지는 지난 ○월 ○일자 「통조림에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에

서 ‘A 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통조림에 발암물질이 첨가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사의 통조림에서 발견된 물질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정정보도문이 나가기 위해서 A사는 원문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 통조림에 발암물질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든가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지 ○월 ○일자 「통조림에 발암물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조사인 A사는 통조림에서 발견된 물질이 발암물질이 아닌 단순 이물질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처럼 반론보도는 원문기사의 진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언론사로서도 자신의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론보도 청구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달에 들어온 책



뉴스, 허깨비를 쫓는 정치

W. 랜스 베넷 저 | 책보세 | 608페이지



1983년 첫 발간된 이후 정치 커뮤니케이션 서적 가운데 탁월한 분석으로 주목받았던 ‘뉴스, 허깨비를 쫓는 정치’의 개정판이 나왔다. 뉴스가 민주주의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하는 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책은 미국의 사회·경제적 산물이자 미국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뉴스의 진화를 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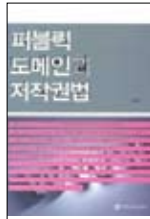
워싱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언론과 정치의 역학관계가 거의 연구되지 않던 시절 방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뉴스 선택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들여다보고, 뉴스 선택이 풀뿌리와 엘리트의 정치 담론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혹은 떨어뜨리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뉴스의 선택과 누락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누구의 이익에 해를 입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철저하게 공중의 이익이 아닌 기업 이익의 논리에 따르는 거대 미디어기업의 폐해를 파헤친다.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409페이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는 아주 복잡하다. 문화적·재산적·인격적 본질이 교차될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용자, 생산과 소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으로, 최근에 와서는 그 구별조차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창작의 출발점이자 이해관계의 완충지대인 퍼블릭 도메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퍼블릭도메인의 심층 고찰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저작권법의 해석과 정책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또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 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이 포기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소멸된 저작물의 상태를 말한다. 저작권자가 없으므로 허가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편집,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 배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정책연구팀〉

꽃히는 말



최인석 경남중재부장(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도끼로 장작을 썰 때 아무데나 대강 내려찍으면 쪼개지지 않거나 쪼개져도 모양이 별로이다. 정곡, 즉 나무의 한 가운데를 세로로 찍어야 단번에 그리고 예쁘게 쪼개진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조정이나 민사재판의 조정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이 있다. 단 한 마디에 승복하거나 마음이 풀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필자의 민사 소송과 언론 중재에서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해가 서산에 걸리었습니다.

절 인근에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계 문제로 절을 상대로 온갖 소송을 해대는 80세 된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다. 안 되는 소송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서 하루는 법정에서 “할머니 해가 서산에 걸리었습니다. 그 연세에 소송하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말이 그대로 ‘꽃혔던’ 모양이다. 조정기일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재판장의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 공시지가의 두 배로 절에다 팔고 편히 사시라고 설득해 놓고는, 주지 스님에게 할머니에게 시달리지 말고 공시지가의 두 배로 사버리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비싸게 사라고 하는 거냐고 하며 못마땅해하여, “그 땅이 할머니 것일 때는 밭이지만 절 땅이 되면 대지나 주차장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의 두 배만 되겠느냐?”고 했더니 대번에 승복하여 결국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고 사는 내용으로 조정이 되었다.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이가 있었다.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 등이 다음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그를 빠뜨리고 말았다. 열이 오른 그는 자신의 인터넷신문 칼럼에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기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운운” 하면서 막말을 썼다. 신문사들이 그냥 있을 리 없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재기일에 출석해서도 내가 뭐 틀린 말 했냐면서 뻔대었다. 상대방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 한 후, “옛날에 공직에 있었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걸 명백히 명예훼손이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할 수도 있다. 설사 출마가 가능하다 해도 그 유죄판결은

선거의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선했을 테니 깨끗이 사과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하였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두 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과하고, 칼럼 내리고, 정정보도 하되, 상대방측은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끝이 났다.

내가 그 마음 다는 몰라도 반은 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땅을 놓고 싸우는 소송이 있었다. 서로 간에 송사가 몇 건인지 모를 정도로 지독하게 싸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맞나 싶을 지경이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갈등의 밑바닥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모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병으로 사망한 노인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이 있었다. 노인의 생각에는 똑똑한 아들이 며느리가 제대로 내조를 않아서, 며느리 생각에는 잘난 남편이 시아버지가 형편이 되면서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유학생활 때 고생한 것이 결국 병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정에서 회부하여 한 사람씩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였다. 나에게도 잘 나가던 형이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하였다. 내 아버지의 애통해하던 모습과 내 형수의 고단한 삶을 내가 보아서 안다. 그 똑똑한 아들(남편)을 잃은 마음이 어떨지 내가 다는 몰라도 반은 안다. 그것으로 상황은 끝이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대성통곡을 쏟아내더니 마음이 풀려서 판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송사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고수들이 장작 패는 모습을 보면 도끼질을 하기 전에 통나무의 모양과 결을 꼼꼼히 살핀다. 도끼로 내려찍어야 할 지점, 즉 정곡을 찾는 것이다. 언론 중재나 민사 조정도 사건의 내용과 분쟁의 핵심을 파악하고 감추어진 결을 찾아서 그곳을 찌르면 효과가 있다. 



○ 중재위원 2인 위촉

지난 8월 사퇴한 남찬순, 김영철 전 위원장의 후임 중재위원이 10월 19일자로 아래와 같이 위촉되었다. 두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인 2011년 9월 1일까지이다.

중재부	성명	현직
서울제2중재부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5중재부	박동숙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국내분쟁조정기관 초청 심포지엄 개최예정

위원회는 오는 30일 프레스센터 19층 대화실에서 국내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 ADR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발제는 김상수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는 이민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가 각각 맡는다.



○ 사무처 가을 체련행사

사무처는 10월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체육공원에서 가을철 체련행사를 가졌다. 지역사무소도 자체 계획에 따라 체련행사를 각각 실시했다. (사진 ①)

○ 조정중재 컨퍼런스

2009년도 제6차 조정중재 컨퍼런스가 23일 개최되었다. “무과실책임주의로 본 포털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장성원(교육팀)씨가 발제를 맡았다. (사진 ②)



○ 외부강사 초빙교육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강사 초빙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사진 ③)

강사	주제	일자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	동양사상에서 배우는 커뮤니케이션	11. 11.
홍은택 [전 동아일보 기자, 자전거 여행가]	홍은택의 자전거 여행	11. 18.
김창환 [서울대 중국어문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논어의 현대적 해석(조정과 설득)	11. 24.

○ 만화 홍보책자 수정판 발간

위원회 만화 홍보책자 「정보통씨, 언론중재위원회 가다」 2009년 수정판이 19일자로 발간되었다. 5,000부가 발간된 이번 수정판은 개정 언론중재법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했으며,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교 등에 배포되었다. (사진 ④)



● 조정 · 중재신청 처리현황

위원회는 2009년 10월까지 모두 1,03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 · 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13건, 조정결정 80건(동의 40건, 이의 29건, 계속 11건), 조정불성립결정 74건, 기각 25건, 각하 9건, 취하 433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8.6%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신문이 5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165건, 인터넷신문 157건, 잡지 26건, 뉴스통신 27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10월말까지 50건의 중재결정과 46건의 중재화해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53건, 반론청구 21건, 추후청구 4건, 손해청구 18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계속					
1~10월	정정	560	225	27	15	10	41	10	2	230(171)	78.6
	반론	102	52	2	4		3	4	1	36(29)	85.6
	추후	28	13				2		1	12(11)	88.9
	손배	344	123	11	10	1	28	11	5	155(113)	75.5
합계		1,034	413	40	29	11	74	25	9	433(324)	78.6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 + 조정결정 중 동의 + 조정결정 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중재 결정	중재 화해 결정
1~10월	정정	53	22	31
	반론	21	16	5
	추후	4		4
	손배	18	12	6
계		96	50	46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11월 16일에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언론보도를 자체 심의하여 총 3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자살보도가 1건, 사생활 침해가 2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1건, 인터넷 신문 2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2009년 10월 한 달 동안 228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적절차 안내가 2건, ▲재상담 예정 4건, ▲타기관 안내가 38건, ▲자체종결 7건, ▲기타 안내가 27건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89건, 주간신문 26건, 방송 30건, 뉴스통신 7건 인터넷 신문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10월 6일 한세대학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 동안 11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 보면 지자체 4건, 언론사 4건, 대학 2건, 공사기업 1건 등이다



“2009 지역방송 심의방향을 위한 토론회” 사회

김정택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9일 부산 그랜드호텔 6층 에메랄드 홀에서 열린 “2009 지역방송 심의방향을 위한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사회를 보았다.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임

박동숙 위원(서울제5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지난 7일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제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 참석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지난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컨버전스 시대의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정보통신정책학회 개최)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종합편성 채널 도입 정책 과제와 전망” 주제발표

최충웅 위원(서울제7중재부, 전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은) 지난 6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도입 정책 과제와 전망”(방송연구원 개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청소년 범죄와 인권세미나”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은 지난 23일 변호사회관 5층에서 “청소년 범죄와 피해자(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토·주공 통합본사 유치 대책협의회” 참석

심병연 위원(전북중재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토·주공 통합본사 유치 대책협의회”(전북도청 개최)에 참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 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언론사 닷컴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아

내,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_ 02)397-3000, 3010, 3100

e-mail_ counsel@pac.or.kr

홈페이지_ www.pac.or.kr

주소_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